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98호 2024. 7. 18.(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126호 사천 두량(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지형도면 고시..... 1
- 사천시 고시 제2024-12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및 실시계획 신고 사항 고시·18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03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19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사천시 고시 제2024-126호

『사천 두량(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지형도면고시

사천시 고시 제2004-352호(2004.06.18.)로 최초 승인·고시하고 사천시 고시 제2005-27호(2005.05.06.), 사천시 고시 제2007-11호(2007.02.01.), 사천시 고시 제2007-43호(2007.05.25.), 로 변경 승인·고시한 사천 두량(전문)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사천 두량(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사천시 두량(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시청로 77)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두량(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함.
-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함.
-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사천시의 자립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일원

나. 면 적 : 118,160.8㎡

5.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08. 6. 30.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구 분		계	전	답	대 지	임 야	도 로	구 거	공 장
면 적(㎡)	기정	118,160.8	22,776	34,279	1,648	55,390.8	734	3,333	-
	변경	118,160.8	-	-	2,141.7	9,431.8	12,061.9	1,754.2	92,771.2
구성비(%)	기정	100.0	19.3	29.0	1.4	46.9	0.6	2.8	-
	변경	100.0	-	-	1.8	8.0	10.2	1.5	78.5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기정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			
합 계	118,160.8		100.0	
■ 공 업 용 지	90,075.9		76.2	
■ 공 공 시 설 용 지	18,653.1		15.8	
- 도 로	12,061.9		10.2	
- 구 거	1,754.2		1.5	
- 공동이용시설	2,141.7		1.8	
- 오폐수처리장	2,695.3		2.3	
■ 녹 지 용 지	9,431.8		8.0	
- 완 충 녹 지	9,431.8		8.0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	평		
합 계	118,160.8	35,743.6	100.0	
■ 산 업 시 설 용 지	90,075.9	27,248.0	76.2	
■ 공 공 시 설 용 지	23,247.9	7,032.4	19.7	
- 도 로	12,061.9	3,648.7	10.2	
- 구 거	1,754.2	530.6	1.5	
- 완충녹지	9,431.8	2,853.1	8.0	
■ 지 원 시 설 용 지	4,837.0	1,463.2	4.1	
- 공동이용시설	2,141.7	647.9	1.8	
- 오폐수처리장	2,695.3	815.3	2.3	

※ 토지이용계획의 녹지용지의 완충녹지를 공공시설용지로 이동하여 표기-금회변경.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1) 도로

■기정

구분	포장구조	조	연장(m)	폭(m)			비 고
				전폭	포장	보도	
계	1	5	1,104				
제1호도로	아스팔트	1	398	12.0	7.0	5.0	2차선
제2호도로	"	1	319	10.0	7.0	3.0	2차선
제3호도로	"	1	44	8.0	5.0	-	폭 5m도로
제4호도로	콘크리트	1	150	4.85	3.0	-	이설농로
제5호도로	콘크리트	1	89	3.0	-	-	외부농로 및 배수지접속
외부접속도로	콘크리트	1	50	2.0	2.0	-	외부농로접속도로

■변경

구분	포장구조	조	연장(m)	폭(m)			비 고
				전폭	포장	보도	
계	1	4	1,021				
제1호도로	아스팔트	1	398	12.0	10.0	-	중로 3-17
제2호도로	"	1	67	10.0	8.0	-	중로 3-16
제3호도로	"	1	328	10.0	8.0	-	소로 1-10
제4호도로	콘크리트	1	228	4.85	3.0	-	소로 3-13

※ 도로시설은 기변경(6개→4개)되어 이용되고 있었으나 금회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변경.

2)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1	녹지	완충녹지	외각 사변	9,431.8	2005. 5. 6.	

3) 공동이용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1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1677	2,141.7	2005. 5. 6.	

4) 오폐수처리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1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1662	2,695.3	2005. 5. 6.	

8.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외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비고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 용지취득비	4,743	2,322		331		2,090	
- 토지매수비	3,642	2,322		331		989	
- 지장물보상비	1,101					1,101	
◦ 조성공사비	5,371					5,371	
- 정지토공	1,958					1,958	
- 도로공사	766					766	
- 우수공사	633					633	
- 오수공사	41					41	
- 상수공사	42					42	
- 구조물공사	314					314	
- 조경공사	89					89	
- 부대공사	434					434	
- 폐기물처리비	48					48	
- 문화재지표조사	31					31	
- 기계	-					-	
- 건축	184					184	
- 전기	143					143	
- 관급자재대	688					688	
◦ 부대비용	573					573	
- 기본조사비	124					124	
- 조사설계비	172					172	
- 시공감리비	-					-	
- 관리비및잡지출	273					273	
- 한전납입금	4					4	
- 통신시설이설비	-					-	
합 계	10,587					10,587	

나.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년차별 투자계획				비고
		2005년이전	2006년	2007년	2008년이후	
합 계	10,587	6,088	3,052	604	843	
◦ 국 비	2,322					
- 보 조	2,322					
- 용 자	-					
◦ 지 방 비	8,265					
- 보 조	331					
- 용자,기채	7,934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다. 년차별 공정계획

공 종 별	총 계 획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비 고	
	물 량	단 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 조사설계 및공사착수 준비	118,160.8	m ²															
◦ 용지매수 및 보상	1	식															
◦ 단 지 조 성	1	식															
- 정 지 토 공	118,160.8	m ²															
- 도 로 공 사	1.104	km															
- 우 수 공 사	1.093	km															
- 오 수 공 사	0.679	km															
- 구조물 공사	138	m															
- 상 수 공 사	1.120	km															
- 전력 및 통신	1	식															
- 조 경 시 설	1	식															
◦ 공동이용건축물	1	동															
◦ 부 대 공 사	1	식															
◦ 합 계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가. 개발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m ²	평		
계	118,160.8	35,743.6	100.0	
◦ 공장시설 부지	90,075.9	27,248	76.2	
◦ 공공시설 부지	13,816.1	4,179.3	11.7	
- 도 로	12,061.9	3,648.7	10.2	
- 구 거	1,754.2	530.6	1.5	
◦ 지원시설 부지	4,837.0	1,463.2	4.1	
- 공동이용시설	2,141.7	647.9	1.8	
- 오폐수처리장	2,695.3	815.3	2.3	
◦ 녹지, 사면	9,431.8	2,853.1	8.0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나. 처분계획

◦ 공장용지

- 본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중 공장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분양, 임대, 양도할 것임

◦ 도로, 녹지, 공동이용시설, 배수지, 오폐수처리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3의 공공시설로서 당해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처분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	평		
계	118,160.8	35,743.6	100.0	
■ 분양. 임대. 양도	90,075.9	27,248	76.2	
- 공장시설 부지	90,075.9	27,248	76.2	
■ 지방자치단체귀속	28,084.9	8,495.6	23.8	
- 도 로	12,061.9	3,648.7	10.2	
- 구 거	1,754.2	530.6	1.5	
- 공동이용시설	2,141.7	647.9	1.8	
- 오폐수처리장	2,695.3	815.3	2.3	
- 녹 지, 사 면	9,431.8	2,853.1	8.0	

11.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12.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등의 물건조서(변경) : 첨부 도면 및 편입조서 참조

- 확정 측량에 따른 추가 면적 발생

나. 토지·건물 등의 권리매수 및 보상방법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하며, 위 특례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것임

다. 토지·건물 등의 권리매수 및 보상추진 현황

◦ 토지매입비는 토지등급에 따라 지가를 고려하여 일시에 전량을 매입하도록 하며 토지매입비의 산정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만을 산정함.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 지장물 보상비는 현시가 및 인접지역 기준보상비를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량은 총 61필지 118,160.8㎡이며 이중 답이 20필지 34,279㎡, 전이 24필지 22,776㎡, 임야가 12필지 55,390.8㎡, 대지가 3필지에 1,648㎡, 기타 2필지에 27㎡로 구성되어 있음.
 - 확정 측량에 따른 추가 매입 필지 총 10필지 568㎡ 중 임야 6필지 534㎡, 전 2필지 19㎡, 답 2필지 15㎡이 추가 편입
- 총 토지매입비는 4,743백만원이 소요되며, 지구내 지장물 보상비는 관정, 분묘 등 약 525백만원을 산정한다. 따라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는 약 4,218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추가로 약 50백만원 정도 소요 예정임.

라. 주민이주대책

◦해당없음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별첨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 평가서(변경없음)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지자체 귀속대상 : 도로, 사면, 배수지, 공동이용시설, 오폐수처리장

구 분	수 량	면 적(㎡)	비 고
계		28,084.9	
도로 및 구거	1식	13,816.1	
사면 및 녹지	1식	9,431.8	
공동이용시설	1식	2,141.7	
오폐수처리장	1식	2,695.3	

2)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 평가서

구 분	면 적(㎡)	감정가원단위(원/㎡)	감정금액(천원)	비 고
합 계	13,816.1			
도 로	12,061.9			
구 거	1,754.2			

15. 농공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16.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별첨

17. 종전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 보상 완료 후 환지계획서 작성

18. 지역발전, 주변환경 및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가. 농림어업의 여건변화

◦ 우리나라 경제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래 '98년까지 34년간 국민총생산이 년평균 7.7%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농림어업 제1차 산업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낮은 성장을 하여왔고,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하여 전체 산업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개발 초기의 37%에서 '98년말에는 5.0%로 크게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 특히 그동안 정부의 공업입지개발정책이 단기적 투자효율만을 추구하여 수도권 등 특정도시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편중 개발시킴으로서 도농간 소득 및 개발격차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주민생활 편익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도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낙후성을 가속시켜 도농간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 또한 UR협상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각국으로부터 농어촌의 소득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지속적인 증대와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1.35ha인 농가가 전체농가의 60%를 차지하는 영세소농체제에서는 농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등 농어촌의 여건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나. 농어촌공업화 시책의 필요성

◦ 농어가 소득증대와 정주생활권 확보로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는 등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원 개발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농여건 및 환경을 가진 일본과 대만은 도농간 소득 및 개발격차 해소문제를 이미 농어촌 공업개발에 의한 농외취업 소득증대로 해결한바와 같이 농어촌공업개발을 통한 농외소득증대가 다소 시일이 소요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으로 도농간 소득 및 개발격차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천시에서는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와 대도시의 과밀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공업개발과 도시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시켜 농촌 유희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소득원 개발에 주력함과 아울러 국토이용의 효율성제고와 한정된 토지공간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일원에 두량농공단지 세부설계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19. 피해방지 계획서(변경없음)

가. 피해방지 계획

두량농공단지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농공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계도를 작성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인근 공단, 농지 및 토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자 함.

1) 부지는 구획별 평면으로 조성하고,

2) 부지조성에 따른 비탈면 보호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

우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비탈면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비탈면의 구배는 흙의 안식각 이상으로 하며, 성·절토부의 비탈면은 건설교통부의 경사 및 소단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외곽사면에는 낙석방지책과 낙석방지망, 옹벽을 설치하여 차후 토사유출방지 및 부지의 안정에 역점을 두어 시공토록 할 것임.

3) 환경오염 방지

공사중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을 설치하며, 차량덮개 설치 운영, 살수차에 의한 살수계획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며,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는 자연유하로 우수관로를 통하여 오·폐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하며, 매연배출업체는 입주제한으로 매연 사전방지토록 할 것임.(변경:오폐수처리장 설치시까지 자체 처리시설 설치하여 처리함.)

나. 피해방지 공사개요

1) 배수시설공사

- 우수관로 : L = 1,093m (내면쉬트 파형강관 D400 ~ D1,500mm)

- 오수관로 : L = 735m (내면복층 P.E관 D400mm)

- 단지내배수 : BF(L = 1,391m) 및 타설개거(0.5*0.5 ~ 1.0*1.0m, L = 431m)

- 산마루측구 : L=1,019m (단지외각 사면)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2) 비탈면 보호공사

- 옹벽 : L=146m(H=3.5m)
- seed spray : 6,695㎡
- 낙석방지망 : 4,309㎡
- 낙석방지책 : 816m
- 가설방음벽 : 371m

3) 조경공사

나무식재 : 건도식재, 녹음식재, 조경식재

다. 종합대책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오·폐수처리장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후 방류토록 할 것이며 대기오염 물질과 소음, 진동공해는 각 기업체별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 진동 규제법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각 공장별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후 공장 가동시 수시로 점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음.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⑩	두량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 업 형	사천읍 두량리 1657번지 일원	118,160.8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⑩	두량 개발 진흥지구	산 업 형	사천읍 두량리 1657번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따름	118,160.8	'05.9.22	

다.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변경)

■ 기 정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			
합 계	118,160.8		100.0	
■ 공 업 용 지	90,075.9		76.2	
■ 공 공 시 설 용 지	18,653.1		15.8	
- 도 로	12,061.9		10.2	
- 구 거	1,754.2		1.5	
- 공 동 이 용 시 설	2,141.7		1.8	
- 오 폐 수 처 리 장	2,695.3		2.3	
■ 녹 지 용 지	9,431.8		8.0	
- 완 충 녹 지	9,431.8		8.0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m ²		
합 계	118,160.8	100.0	
■ 산업 시설 용 지	90,075.9	76.2	
■ 공공 시설 용 지	23,247.9	19.7	
- 도로	12,061.9	10.2	
- 구 거	1,754.2	1.5	
- 완충녹지	9,431.8	8.0	
■ 지원 시설 용 지	4,837.0	4.1	
- 공동이용시설	2,141.7	1.8	
- 오폐수처리장	2,695.3	2.3	

■ 녹지율 검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구역면적의 20% 이상
- (예외조항)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제3장 제1절 : 농공단지는 수립기준 제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산업입지개발지침) : 단지규모 1km²미만 5~6.5%미만

라. 지형도면 : 별첨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부분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가구번호	지번	변경		
④	A	25,471.3	A - 1	1662	2,695.3	오폐수처리장 공장용지	
			A - 2	1661	3,296.7		
			A - 3	1660	4,535.4		"
			A - 4	1659	3,054.8		"
			A - 5	1658	3,049.6		"
			A - 6	1657	8,839.5		"
	B	11,670.5	B - 1	1687	3,536.9	공장용지	
			B - 2	1686	4,260.7		"
			B - 3	1685	3,872.9		"
	C	33,287.3	C - 1	1675	2,183.9	공장용지	
			C - 2	1676	2,125.5		"
			C - 3	1677	2,141.7		공동이용시설 공장용지
			C - 4	1673	2,658.9		
			C - 5	1674	2,682.8		"
			C - 6	1678	6,283.8		"
			C - 7	1679	5,098.8		"
			C - 8	1680	5,339.9		"
			C - 9	1681	4,772.0		"
	D	24,483.3	D - 1	1665	2,211.9	공장용지	
			D - 2	1666	2,082.9		"
			D - 3	1667	4,594.9		"
			D - 4	1668	5,234.9		"
			D - 5	1669	6,536.2		"
			D - 6	1670	3,823.0		"
	E	1,754.2	E - 1	1663	698.6	구거	
			E - 2	1671	233.3		
			E - 3	1672	597.6		
			E - 4	1682	72.3		
			E - 5	1683	118.2		
			E - 6	1684	34.2		
	F	9,431.8	F - 1	1664	130.3	완충녹지	
			F - 2	1692	6,069.8		
F - 3			1693	407.5			
F - 4			1694	481.3			
F - 5			1695	355.1			
F - 6			1696	1987.8			
G	12,061.9	G - 1	1688	5,919.4	중로3-17 중로3-16 소로1-10 소로3-13		
		G - 2	1689	938.7			
		G - 3	1690	4,150.4			
		G - 4	1691	1,053.4			

사 천 시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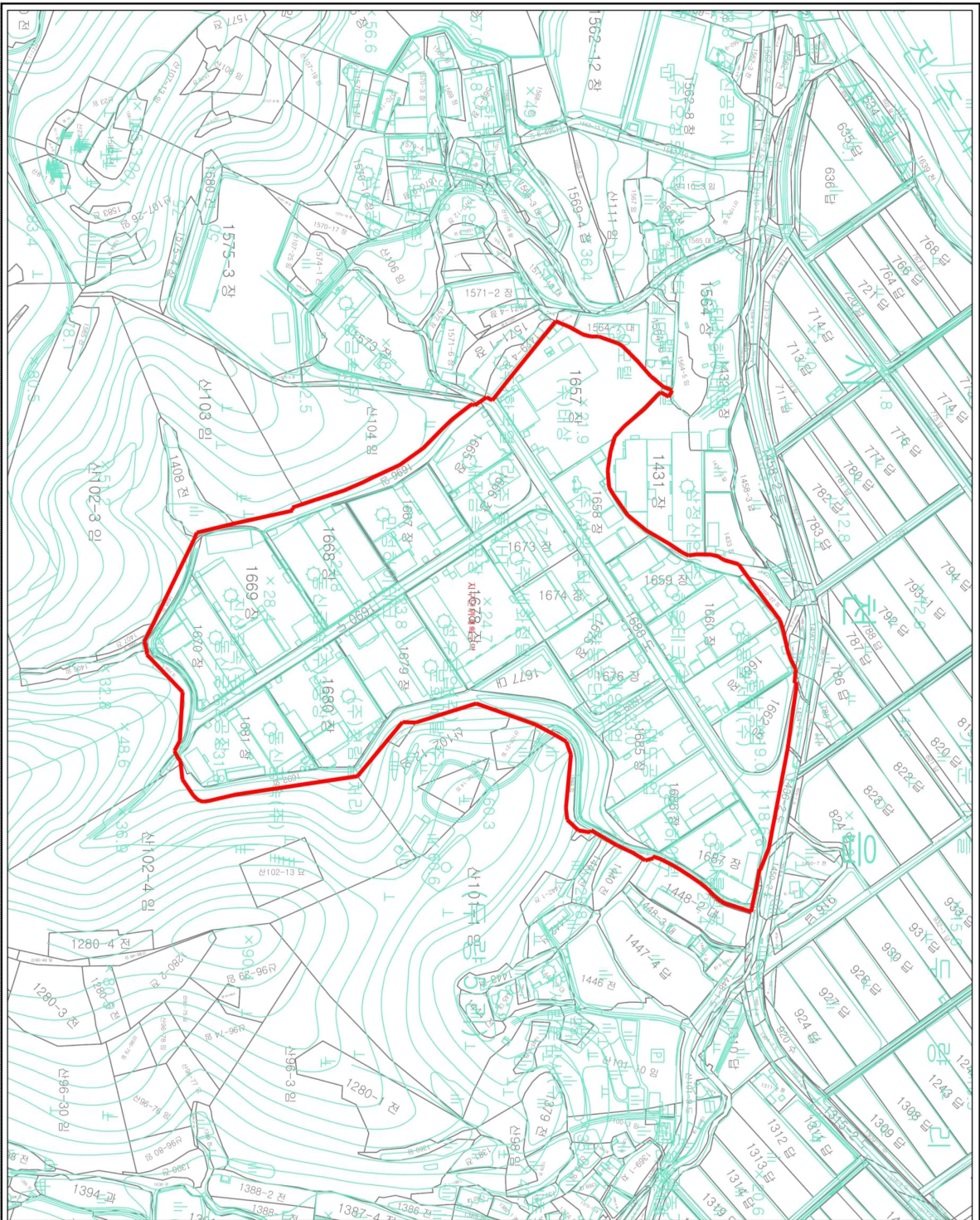
제898호

나.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사천읍 두량리 1657번지 일원	용 도	공장 및 부대시설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율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20m 이하)
	배 치, 형 태	건물의 형태 및 배치는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배치 (도면참조)
	색 채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권장)
	건 축 선	-




별첨 : 실시계획 지형고시도(변경)

- 농공단지 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토지이용 계획도(변경없음)
- 유치업종 배치계획 결정도(변경)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총괄도(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시천 두랑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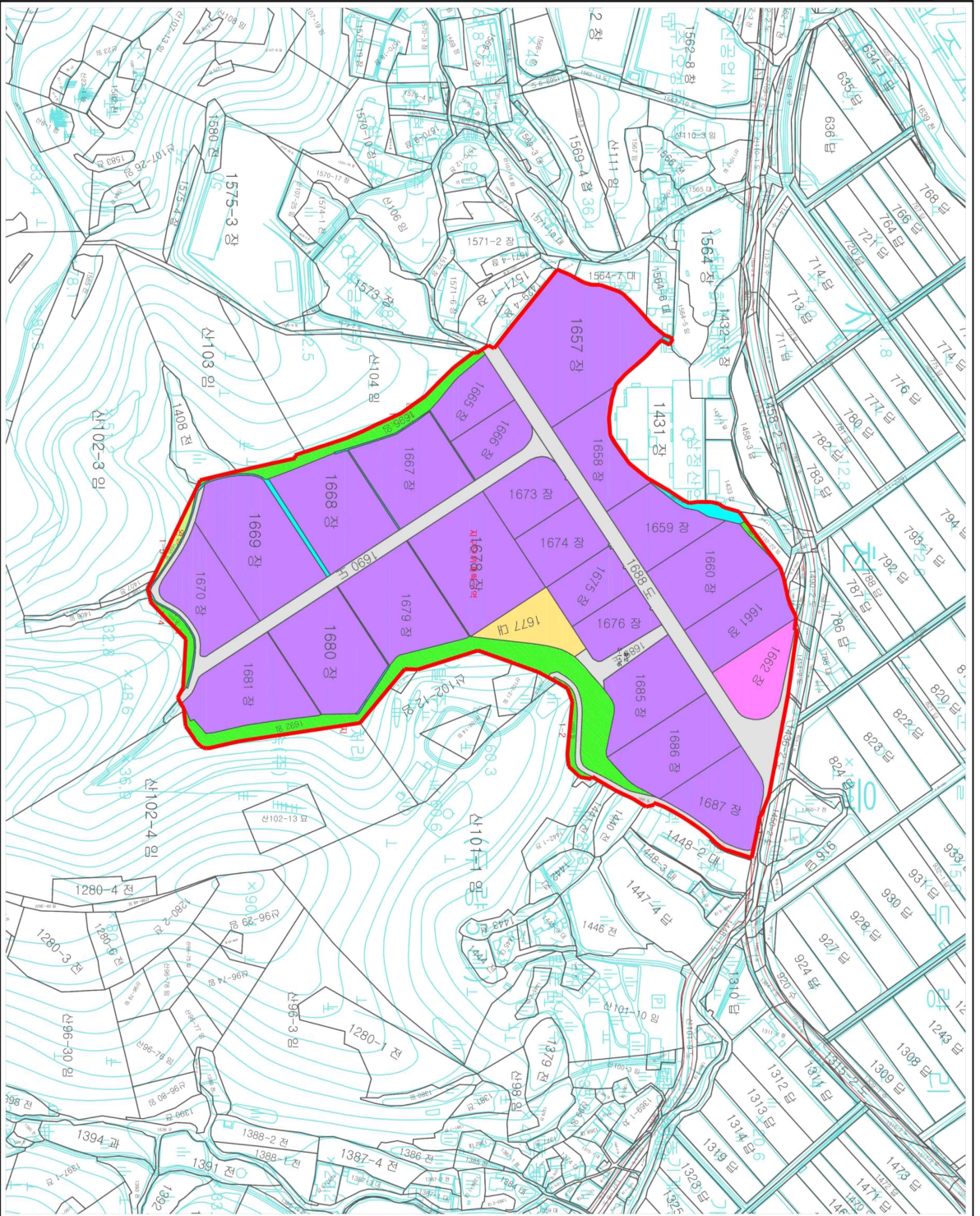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도
[변경없음]**

-  구 역 계
-  기 적 선
-  기 형 선



Scale = 1 : 3,000





사천 두령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안)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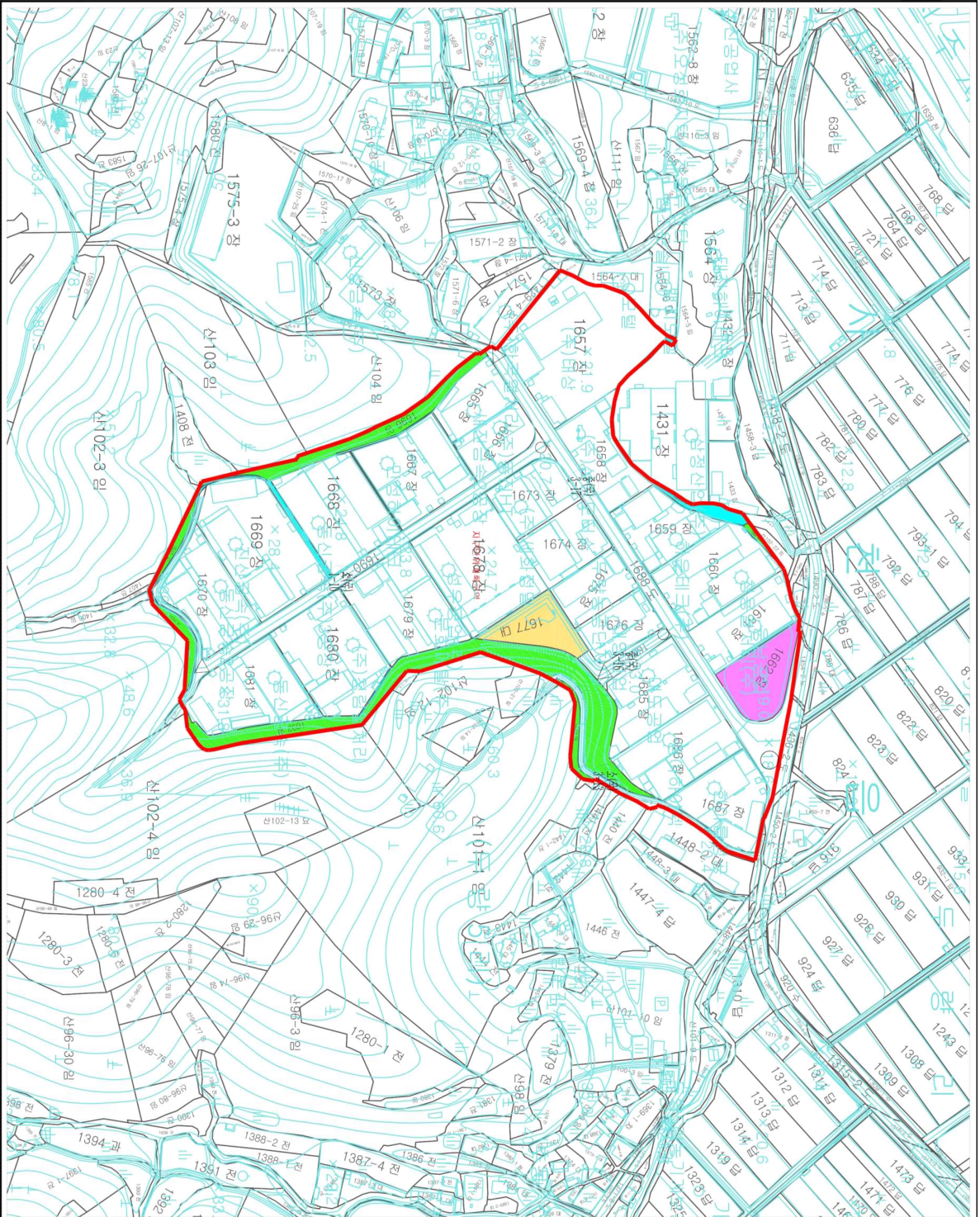
- 구 역 계
- 지 적 산
- 지 형 산

구 분	기 정	면적(㎡)	구 성비 (%)
합 계	118,160.8		100.0
신원(산업용지)	90,075.9		76.2
공공(산업용지)	23,247.9		19.7
도로	12,061.9		10.2
구 거	1,754.2		1.5
인촌녹지	9,431.8		8.0
지형(산업용지)	4,837.0		4.1
공용(이용시설)	2,141.7		1.8
배수(용출정관)	2,895.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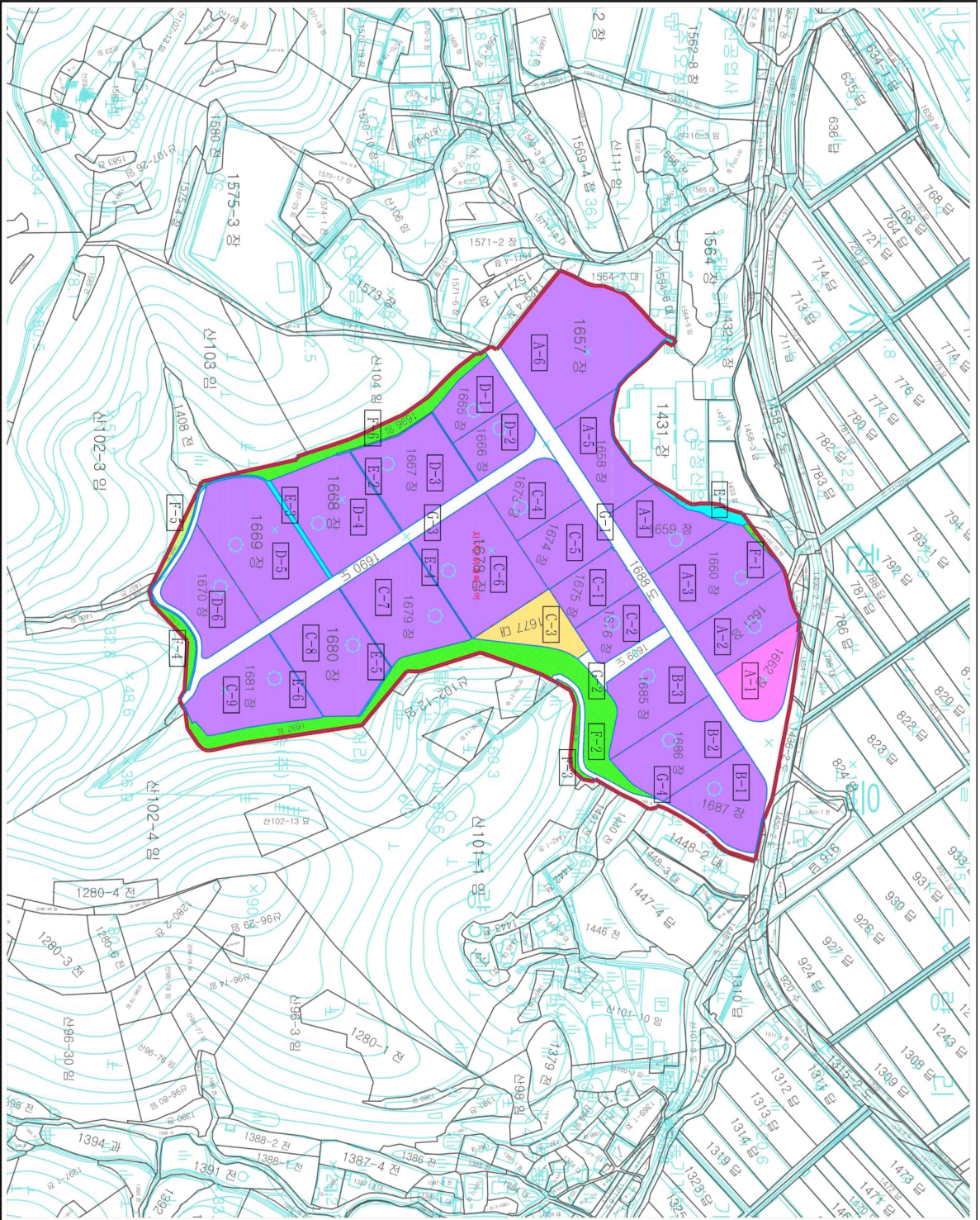


Scale = 1 :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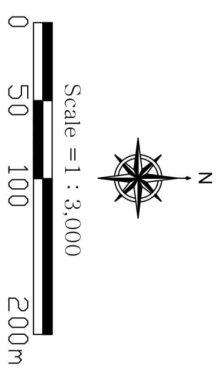
<p>사전 두량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면</p>	
<p>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p>	
	<p>구 역 계 지 적 선 계 획 시 설 선 도 완 중 녹 지 유 수 지 공동이용시설 폐수종말처리장</p>
<p>Scale = 1 : 3,00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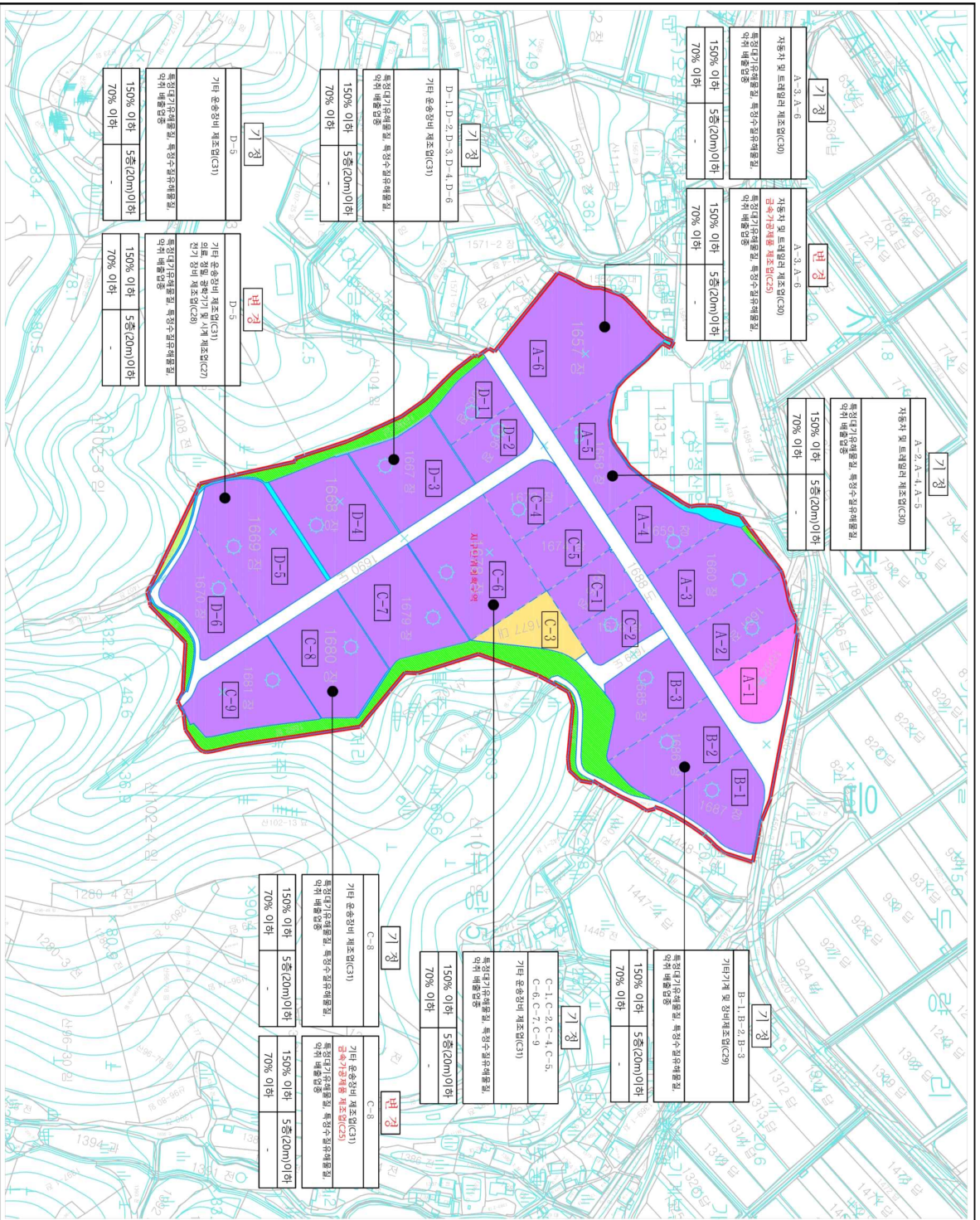


사천 두량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구	역	계
	지	적	선
	계	획	선
	획	지	선
	A-1	지구 및 획지	번호





시천 두량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도

(변경)

	구역계
	계획시설선
	회차선
	가구 및 획지 변호선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Scale = 1 : 3,000



시천 두랑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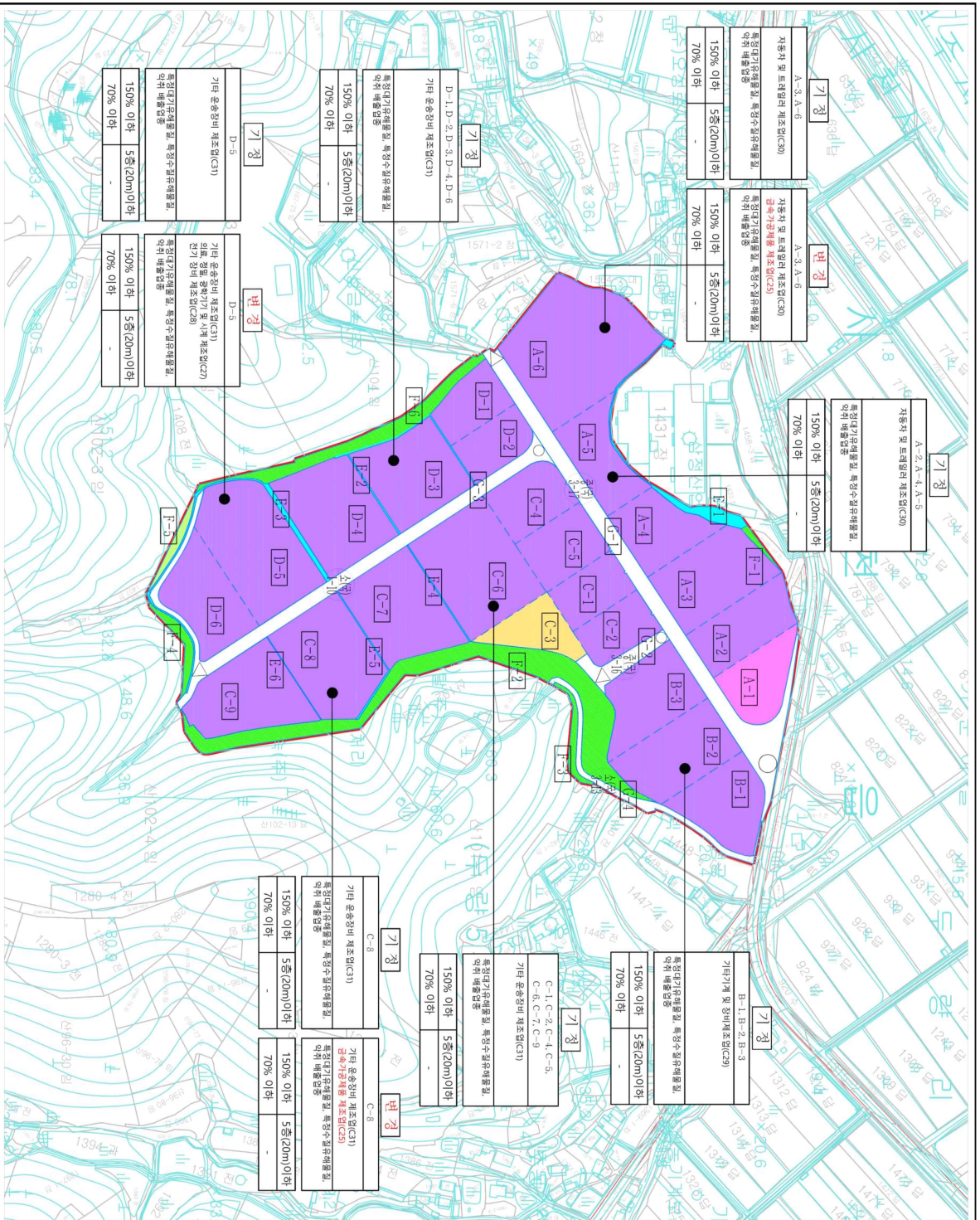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총괄도

(변경)

- 구역 계
- 지적 선
- 계획시설선
- 획계선
- A-1
가구 및 획지번호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적률
- 건폐율, 높이 등

구분	면적(㎡)	구성비 (%)
합계	118,160.8	100.0
신입시영양지	90,075.9	76.2
공공시영양지	23,247.9	19.7
도로	12,061.9	10.2
구거	1,754.2	1.5
연출녹지	9,431.8	8.0
지원시영양지	4,637.0	4.1
공동이용시설	2,141.7	1.8
폐수종말처리장	2,893.3	2.3

Scale = 1 : 3,000



기정
A-2, A-4, A-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체조면(C20)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수질유해물질
역위 배출입증
150% 이하 5층(20m)이하
70% 이하

기정
A-3, A-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체조면(C20)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수질유해물질
역위 배출입증
150% 이하 5층(20m)이하
70% 이하

변경
A-3, A-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체조면(C20)
건축가경채용 체조면(C25)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수질유해물질
역위 배출입증
150% 이하 5층(20m)이하
70% 이하

기정
B-1, B-2, B-3
가터우물 및 영리채조면(C20)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수질유해물질
역위 배출입증
150% 이하 5층(20m)이하
70% 이하

기정
C-1, C-2, C-4, C-5,
C-6, C-7, C-9
가터우물영리 체조면(C31)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수질유해물질
역위 배출입증
150% 이하 5층(20m)이하
70% 이하

기정
C-8
가터우물영리 체조면(C31)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수질유해물질
역위 배출입증
150% 이하 5층(20m)이하
70% 이하

변경
C-8
가터우물영리 체조면(C31)
건축가경채용 체조면(C25)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수질유해물질
역위 배출입증
150% 이하 5층(20m)이하
70% 이하

기정
D-1, D-2, D-3, D-4, D-6
가터우물영리 체조면(C31)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수질유해물질
역위 배출입증
150% 이하 5층(20m)이하
70% 이하

기정
D-5
가터우물영리 체조면(C31)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수질유해물질
역위 배출입증
150% 이하 5층(20m)이하
70% 이하

변경
D-5
가터우물영리 체조면(C31)
영리 체조면(영리) 및 시계 체조면(C27)
전기 영리 체조면(C28)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수질유해물질
역위 배출입증
150% 이하 5층(20m)이하
70% 이하

변경
D-5
가터우물영리 체조면(C31)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수질유해물질
역위 배출입증
150% 이하 5층(20m)이하
70% 이하

두량(전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농공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농공단지 위치

- 관리기관 : 사천시
- 농공단지 위치 : 사천읍 두량리 1657번지 일원

나. 조성목적

- 농촌공업개발과 도시공업의 지방분산 촉진
-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의 집적화와 전문화를 위한 생산용지 확보
- 지역업체의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토지공간 활용을 도모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 증대

다. 추진경위

- '04. 6. 18. : 두량농공단지 농공지구 지정 승인
- '04. 7. 13. : 두량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 '05. 1. 7. : 두량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 '05. 3. 24. : 두량농공단지 보상계획 공고
- '05. 5. 6. : 두량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 '05. 9. 22. : 두량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 '05. 12. 1. : 두량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 '06. 6. 8. : 두량농공단지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 '07. 2. 1. : 두량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07. 7. 19. :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07. 10. 18. :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 '20. 11. 19. : 두량(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라. 분양현황 및 계획

[기정]

총면적	분양 가능 면적 (㎡)					조성 기간	조성기관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117,036	-	-	92,707	92,707	92,707	05.11.~ 06.12.	사천시

[변경]

(단위 : ㎡)

구분	총면적		분양 가능 면적				조성 기간	조성기관	
	기정	변경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계	117,036	118,160.8	90,075.9	-	-	-	90,075.9	2004 ~ 2014 사천시	
산업시설구역	92,707	90,075.9	90,075.9	-	-	-	90,075.9		
지원시설구역	2,749	4,837.0	-	-	-	-	-		
공공시설구역	13,994	23,247.9	-	-	-	-	-		
녹지시설구역	7,586	-	-	-	-	-	-		

※ 변경사유 : 지적분할에 의한 토지대장 등재면적 변경, 녹지시설구역(완충녹지)은 공공시설구역으로 이동

마. 입주 및 고용계획

구분	입주 현황		고용 계획 (명)			비고 (업종)
	업체수	면적 (㎡)	계	남	여	
기정	24	92,707	570	481	89	
변경	21	90,075.9	502	434	68	현재 ('24.06.)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시설명	2017. 9월 현재	확충계획	
		규모	일정 및 시행자
도로 철도 항공	- 국도 3호선(폭 25m, 6차로) 사천읍에서 2.5km 연결 - 진입도로 : L=0.73km(B=8.0m) - 철도 : 경전선(진주역) 9km 이용 - 공항 : 사천공항 1km 이용	-	-
용수	· 계획용수 : 384m ³ /일	-	-
전력	- 3,074kw	-	-
환경	-	-	-
기타	- 교육 : 중학교 11, 고등학교 9, 대학교 1 - 의료 : 의원 68, 약국 34, 병원 5 - 사천시청 : 12km	-	-

2. 관리기본방향 및 농공단지 발전계획

가. 목표

- 합리적인 공장배치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 관리인력 고용증대로 효과 극대화

나. 추진계획

- 입주기업체 공장건설 지원 및 조기 가동 행정지원
- 고용인력 확보 지원
-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모 등

3. 관리기본계획

가.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기정)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면적(㎡)	117,036	92,707	2,749	13,994	7,586
비율(%)	100.0	79.2	2.3	12.0	6.5

1) 용도별 구획면적(변경)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비 고
면적(㎡)	118,160.8	90,075.9	4,837.0	23,247.9	
비율(%)	100.0	76.2	4.1	19.7	

※ 변경사유 : 지적분할에 의한 토지대장 등재면적 변경, 녹지구역(완충녹지)은 공공시설구역으로 이동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 (2) 본 농공단지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한 공공시설 중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산·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석탄,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설비는 제외)
- (4) 완충녹지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기정]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4)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5)

가) 산업시설구역 [변경]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중 태양력발전업(D35114)
(단, 건축물(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 부동산업(L68)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같은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중 본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단, 건축물(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 입주대상업종 중에서 환경성검토 결과 적합 판정업체

나)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3) 입주우선순위

- 각종 상위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사천시 지역특화산업,외국인기업 전용기업 및 지방산업단지와 관련성이 큰 업종으로 수송기계부품 전문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
- 수송기계부품 관련 업종으로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사업성 검토 적합업체으로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대기등 공해 발생이 적은 업체

4) 입주제한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기준

- 가)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향상
 - 나) 단지의 토지이용 고려 및 획지규모, 분할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계열화
 - 다) 공동시설 설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블록단위로 배치
 - 라)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 마)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배치
 - 바)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등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배치
- * 태양력발전업은 산업시설구역 전체 용도에서 운영할 수 있음(입주자격 참고)

※ 업종별 배치계획도 참고

라. 지원(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1) 공공시설 설치

(가) 공동이용시설

	시 설 명	공동이용시설(관리실)	비 고
설 치 개 요	위 치	기정 : 사천읍 두량리 산102-11번지 변경 : 사천읍 두량리 1677번지	·위치변경없음 ·지번변경
	부지면적	기정 : 2,749㎡ 변경 : 2,141.7㎡	
	규 모	150.04㎡	
	사 업 비	213백만원	
	시설구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시 설 운 영	운영방법	입주기업체협의회 운영위탁 (시에서 지도점검)	
	운영주체	사 천 시	
	운영계획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운영 (자율적 참여 유도로 상호 협력체제 유지)	

(나) 오·폐수처리시설

- 설치장소 : 기정 :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1425번지 일원
 변경 :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1662번지 일원(위치변경없음, 지번변경)
- 운영주체 : 사천시
- 조성면적 : 기정 : 2,750㎡
 변경 : 2,695.3㎡(구역계 변경없는 등재면적 정정)
- 규 모 : 258㎡/일
- 사 업 비 : 650백만원
- 처리방법 : AO법 + 응집침전 + 활성탄 여과공법

2) 시설·관리·보수 운영계획

- 운영방법 : 입주기업체협의회 자체적 운영
- 운영주체 : 입주기업체협의회
- 운영계획 : 입주기업체에서 운영(자율적 참여 유도로 상호협력체제 유지)
 ※ 시설물의 파손·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등 포함

마. 사후관리 계획

- 1)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

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과 관련하여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

나)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합필한 산업용지는 1년 이내에 재분할을 할 수 없음.(위반 시 입주계약 해지)

3) 분양용지관리

- 가)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 유희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철저
- 나) 농공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법」, 「농공단지 통합지침」 및 본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4) 환경관리

-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나)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
- 다)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따른 제한업종 및 폐수 발생업체는 입주를 제한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공장설립 시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는 가능함. (단,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5) 안전관리

-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 다) 입주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기반시설관리

- 가) 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 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4. 농공단지 관리 종합계획

가. 생산·수출 및 고용전망

1) 생산·수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액	내수	수출 (천달러)	가동율(%)	비고
현황	40,053		4,383	100	
향후전망	42,055		4,602	100	

2) 고용전망

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

나) 기술과 정보 및 자본 축적으로 지역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능력요건 확보

나. 임금소득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가) 창원, 진주, 사천 등 경남의 주요도시들이 5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권역 내 산업연계 개발축의 형성은 물론, 동력확보 및 도시서비스시설, 교통시설(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철도)에 대한 접근이 용이

다) 농공단지 조성의 효과는 농업에 의한 단순한 생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크며 소득창출이 활발하여 지역경제의 성장과 아울러 주민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

다. 인력수요 및 지역기능인력육성 등 지역별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1)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구분	업체수	면적(m ²)	필요인원	현인원	부족인원	비고
계	21	78,559.5	550	50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3	18,714.8	90	77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7)	-	-	-	-	-	
전기장비 제조업 (C28)	-	-	-	-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C29)	12	35,537.7	280	26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5	20,770.1	160	15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	3,536.9	20	10	-	

2) 지역별 인력수요

- 본 계획대상지(사천읍)는 정촌면, 정동면에 인접해있으며, 2023년 12월 현재 인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인력수급은 사천시에서 인력 수급

구 분	가구 수 (가구)	인 구 수 (인)			가구당 인구
		계	남	여	
계	16,003	32,810	17,034	15,776	1.95
사천읍	9,002	17,593	9,374	8,219	1.95
축동면	895	1,488	779	709	1.66
정동면	6,106	13,729	6,881	6,848	2.25

라. 인근 산업단지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 2023년 12월 사천시에 입지해 있는 산업(농공)단지(산업입지법에 따른)는 총 17개로서 10개단지가 준공되어 약 20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어 이들 단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공공·행정기관과의 수의계약체결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선구매
- 입주업체간 정보교환 및 공동 판매를 통한 입주업체의 경쟁력 및 협력 강화

사천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천㎡)	비 고
	계		7,871	
1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사천시 사남면 일원	2,555	완료
2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사천시 사남면 일원	1,616	완료
3	사 남 농 공 단 지	사천시 사남면 일원	568	완료
4	송 포 농 공 단 지	사천시 송포동 일원	104	완료
5	곤 양 농 공 단 지	사천시 곤양면 일원	84	완료
6	두 량 (전 문) 농 공 단 지	사천시 사천읍 일원	118	완료
7	축 동 구 호 농 공 단 지	사천시 축동면 일원	106	완료
8	향 촌 삼 재 농 공 단 지	사천시 향촌동 일원	92	완료
9	종 포 일 반 산 업 단 지	사천시 용현면 일원	376	완료
10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시 용현면 일원	605	조성중
11	향 촌 2 일 반 산 업 단 지	사천시 사등동 일원	69	완료
12	흥 사 일 반 산 업 단 지	사천시 곤양면 일원	673	조성중
13	대 동 일 반 산 업 단 지	사천시 축동면 일원	102	조성중
14	축 동 일 반 산 업 단 지	사천시 축동면 일원	254	조성중
15	대 진 일 반 산 업 단 지	사천시 곤양면 일원	251	조성중
16	금 진 일 반 산 업 단 지	사천시 서포면 일원	298	조성중
17	서 부 일 반 산 업 단 지	사천시 곤양면 일원	310	조성중

마.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 관리주체

- 사천시

2) 관리방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자체운영으로 입주기업 상호 협력체제 유지
- 사천시에서 지도 점검 실시

3) 입주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운전자금 지원
-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구조조정자금 지원
-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인력 지원 및 기술개발 지도 알선
- 수송기계부품혁신기술센터(TIC)에서 기술인력 지원 및 기술개발 지도 알선
- 조세지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경상남도 도세 및 시세 감면 조례에 따름

바.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1)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농공단지 부대시설 관리 및 건의사항 수렴
- 2) 입주기업대책위원회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

별

첨

가. 용도별 구역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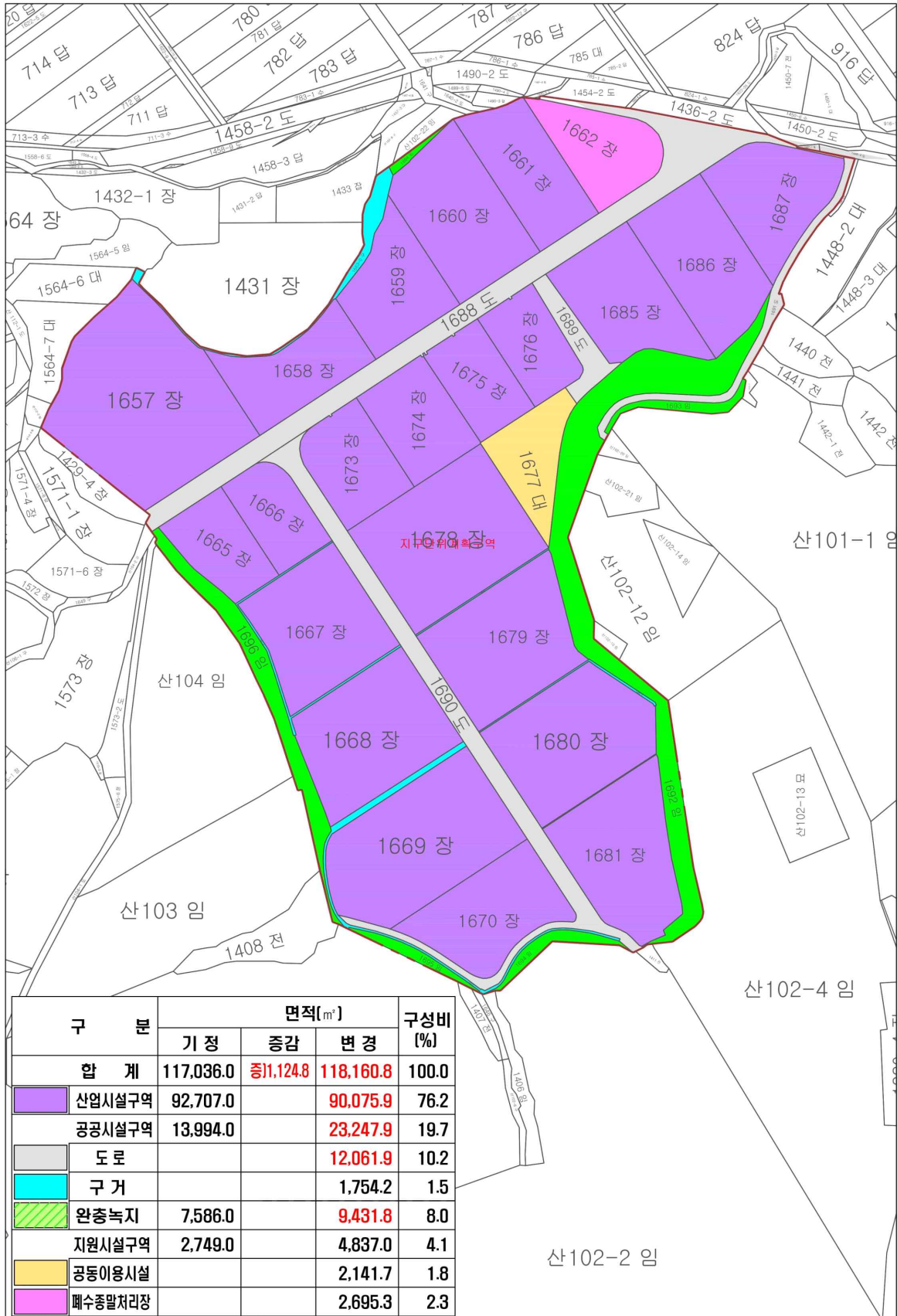
나. 업종별 배치계획도

별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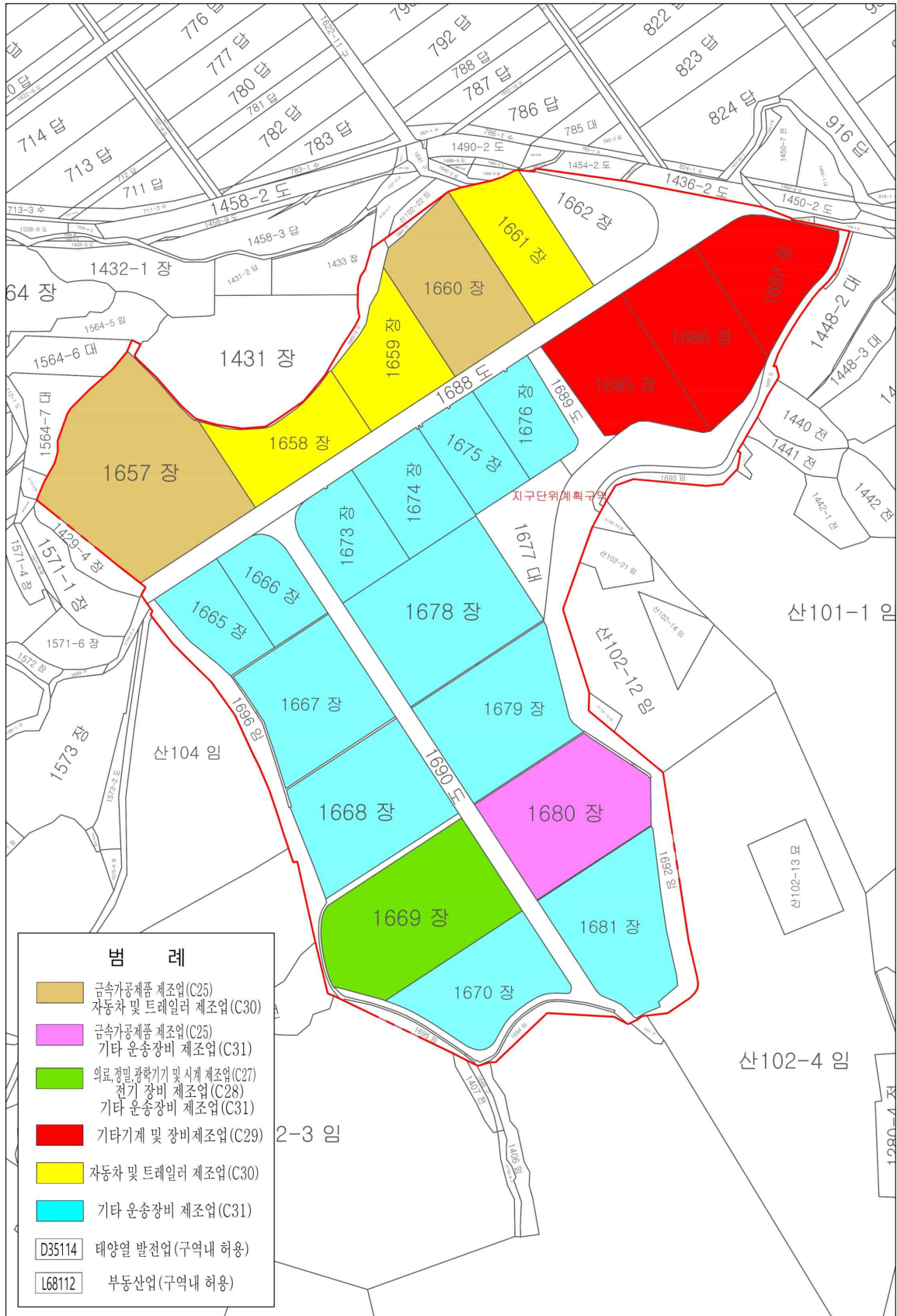
가. 용도별 구역계획도(기정)



가. 용도별 구역계획도(변경) - 지적면적 정정



나. 업종별 배치계획도 (변경)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사천시 고시 제2024-12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및 실시계획 신고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7. 18.

사 천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승인번호 (연월일)	목 적	위 치	면적(㎡)	승인기간	피 승인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4-8 (2024. 6. 24.)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6m*9m)	용현면 신촌리 555-6번지선	계: 1,025 - 직접: 54 - 간접: 971	2024. 6. 24. ~ 2039. 6. 23.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사항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		점용·사용 승인사항		공사내용 (인공구조물 설치)	공사 예정기간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번호 (연월일)
주 소	성 명	위 치	면적(㎡)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	서포면 다평리 1286-8번지선	1,070(직접)	갯섬항 어장진입교량 설치	2024. 6. ~ 2025. 6.	2024-9 (2024. 6. 2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	용현면 신촌리 555-6번지선	계: 1,025 - 직접: 54 - 간접: 971	해양쓰레기 선상집하 장 설치	2024. 6. ~ 7.	2024-10 (2024. 7. 16.)

사 천 시 공 보

제898호

사천시 공고 제 2024-103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 7. 18.

사 천 시 장

- 공 고 명 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공 고 기 간: 2024. 7. 18. ~ 2024. 8. 2.(15일간)
-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65주4515	컨코드	김*은	2024. 7. 8.	지인에게 맡겨둔 차량이 없어짐, 연락처가 바뀌어 연락이 되지 않음.
140두1583	C200 Cabriolet	강*훈	2024. 7. 8.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차주의 허락 없이 가져가 운행정지를 신청함.

4.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